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병역미필자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해양경찰학과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요건 중 병역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고교졸업자 취업 확대를 위해 해수산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채용 도입을 위한 채용근거를 마련하는 등 채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이후 징계없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기간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우수(유공)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제도의 운영 중에 나타난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2년 이상 대학에서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을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에 병역미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운항분야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해수산계고

등학교의 졸업예정자를 순경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채용응시연령 조정 및 필기시험과목 신설(안 제16조, 별표3, 별표6)

나. 대규모 재난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채용시험을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함(안 제24조, 제28조)

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이후 징계 없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토록 규정(안 제53조)

라.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유공)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은 1년의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

마. 특수기술부문 경력경쟁채용분야를 현실에 맞게 부문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별표1)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람으로서 「병역법」에 따른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법률에 따라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및 여성을 포함하고, 임용예정계급”을 “사람(임용예정계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운항분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임용예정 계급은 순경으로 한다)

제2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험실시권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시험의 방법·장소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험을 연기·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제28조제3항 전단 중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을 “제24조를”로 한다.

제53조제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사유가 된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가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다)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을 했으나 해

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제7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유공)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제8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성적의”를 각각 “성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근무성적”을 “근무성적:”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제1호 중 “성적의”를 “성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근무성적”을 “근무성적:”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필수과목은 해사법규·해사영어로 하고, 선택과목은 항해술 또는 기관술 중 1과목으로

한다.

부 칩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수기술부문(제16조제3항제1호 관련)

부문별	특수기술
정보통신	유선·무선·정보통신보안 또는 전자통신기술
감식	지문·화재·족흔적 또는 사진의 감식기술
전산	전산관리·시스템운영·업무분석·설계 또는 프로그래밍개발 기술
항공	항공기의 조종 또는 정비기술
함정	함정의 조종 또는 기관의 정비기술
장비	무기의 재생 또는 정비기술, 차량의 정비 또는 운전기술
회계	경리·예산편성 또는 회계감사
외사	통역·번역 등 외국어 전문능력
구조·특공	해상인명구조 및 대테러 전술·작전 수행
구급	응급처치 능력
홍보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프로그램 운용능력
경비작전	통합방위 및 책임항만 방호 등 작전계획 수립·실행
해양기상	해양기상 분석·예측
건축	건축(공사·감리 및 인·허가 등 포함) 관련 전문기술
조선기술	함정 건조기획 및 감독능력
항공관제	항공관제용 통신장비 운용·관리 및 항공교통 관제
드론운영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장비관리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제29조제1항 관련)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경정 이상	25세 이상 40세 이하	27세 이상 40세 이하 (항공 분야는 27세 이상 45세 이하)
경감·경위	-	23세 이상 40세 이하 (정보통신 및 항공 분야는 23세 이상 45세 이하)
경사·경장	-	20세 이상 40세 이하
순경	18세 이상 40세 이하	18세 이상 40세 이하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것을 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20세 이상 30세 이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③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u>사람으로서 「병역 법」에 따른 현역 또는 보충 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법률 에 따라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및 여성을 포함하고, 임용예정계급은 경 사 이하로 한다)</u>	3. ----- ----- <u>사람(임용예정계급</u> ----- ----- -----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 <u>초·중등교육법</u> 」에 따라 <u>설치된 고등학교에서 해양경 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 박운항분야 관련 교육을 이수 한 졸업예정자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임용 예정 계급은 순경으로 한다)</u>

용시험등“으로 본다.

제53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① (생략)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간에 포함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기간

가.·나. (생략)

<신설>

-----.

제53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사유가 된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가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다)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③ ~ ⑦ (생략)
제73조(근속승진) ① (생략)

<신설>

② ~ ④ (생략)

경우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을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73조(근속승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유공)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

제81조(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 ② (생략)

③ 최종합격자는 제3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78조제2항에 따라 제3차시험을 생략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1. 제1차시험 성적의 36퍼센트
2. 제2차시험 성적의 24퍼센트
3.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40퍼센트

④ (생략)

제82조(특례 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생략)

② 최종합격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차시험을 생략한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항까지와 같음)

제81조(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성적: -----
2. ----- 성적: -----
3. ----- 근무성적: -----

④ (현행과 같음)

제82조(특례 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81조제4항을 준용한다.	-----.
1. 제1차시험 <u>성적</u> 의 60퍼센트	1. ----- <u>성적</u> : -----
2. 해당 계급에서의 <u>근무성적</u> 40퍼센트	2. ----- <u>근무성적</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	
연 락 처	(032) 835 - 2335